

제 4 장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1절 무역 원활화

제 4.1 조 목적 및 원칙

이 협정상 무역의 원활화 및 양 당사국 간 무역 원활화 이니셔티브의 추진 협력을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이 협정에 따라 거래되는 상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 절차를 운영하는 것에 합의한다.

- 가. 절차는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고 세수 확보 및 사회 보호를 위한 정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준수 및 원활화 사이의 균형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국제 기준에 기초하여 간소화되고 조화된다.
- 나. 반입 절차는 수입자와 수출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관되고 투명하도록 한다.
- 다. 당사국은 절차에 대한 중요한 수정을 채택하기 전에 자국의 무역업계 대표들과 협의를 갖는다.
- 라. 절차는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증진함으로써 준수 노력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위험평가 원칙에 기초한다. 그리고
- 마.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합의된 무역 원활화 조치의 적용 및 준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협력, 기술지원 및 모범사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정보 교환을 장려한다.

제 4.2 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관절차와 관행이 예측가능하고, 일관되며, 투명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이 수출, 수입 또는 통과와 관련하여 적용하거나 집행하는 모든 관세법 및 모든 행정절차를,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표한다.
3. 각 관세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관세 사안에 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질의를 다루는 하나 이상의 질의처를 지정한다.

그러한 질의를 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는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3 조 조화 및 원활화

1. 각 당사국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라고 한다)의 관세데이터모델과 WCO의 관련 권고사항 및 지침에 따른 일련의 공통적인 데이터 요소와 처리절차 개발을 포함하여 국제기준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상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자국 각 기관의 요구사항이 기관이나 그 기관을 대신하는 관세당국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집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역원활화를 위하여 조정되도록 보장한다. 이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수입자 및 수출자가 하나의 기관에 모든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목적으로 자국 각 기관의 데이터 요구사항을 조화시키는 조치를 한다.

제 4.4 조 자동화 시스템의 사용

1. 각 관세당국은 WCO 내 이 분야에서의 진전상황을 고려하여, 특히 종이없는 무역의 맥락에서, 통관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 및 통신기술을 적용한다.

2. 각 관세당국은 위험관리 및 선별을 위한 전자 또는 자동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선적의 도착 전 정보와 자료의 제출 및 처리를 포함하여 상품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 및 통신기술을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4.5 조 위험관리

통관 절차를 운영함에 있어, 각 관세당국은 고위험 상품 선적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위험 상품의, 반출을 포함한, 통관을 촉진한다. 이에 더하여, 관세당국은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하면서 위험관리에 관한 응용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다.

제 4.6 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양 당사국은 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이하 “AEO” 라고 한다) 개념의 이행을 증진한다. 양 당사국은 국제무역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AEO 안전 지위의 인정을 고려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관세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어떠한 당사국이든 그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AEO 지위를 가진 업체에 대하여 무역

원활화의 혜택을 제공한다.

제 4.7 조 상품의 반출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당국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가. 자국 관세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상품을 반출하는 절차

나. 도착 시에 상품을 반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상품의 물리적 도착 전에 정보를 사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다.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도착 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그리고

라. 적용가능한 관세·조세 및 수수료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수입자가 상품을 세관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절차. 상품 반출 이전에 당사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수입자에게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 조세 또는 수수료의 최종 지급액을 충당하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긴급 통관을 요하는 상품이 공휴일을 포함하여 하루 24시간 통관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이나 수출 절차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통제 및 실사에 참여하는 모든 권한 있는 행정 당국이 동시에, 그리고 단일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4.8 조 특송화물

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가. 특송화물을 위한 별도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규정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WCO 탁송물 즉시반출 지침을 활용한다.

나. 특송화물이 도착하기 전 그 특송 화물의 반출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전자적 제출 및 처리를 규정한다.

다.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라. 자국 법령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신속하게 특송화물을 반출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마.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미화 100달러 이하 특송화물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한다.

제 4.9 조 사전심사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나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관세당국을 통하여 다음에 대하여 서면 사전심사 결정을 내린다.

가. 품목분류

나. 관세평가협정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의 적용

다.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2. 각 당사국은 심사 결정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그러한 사전심사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각 당사국은 신속하게 그리고 요청 후 90일 또는 자국의 법에 이례적으로 명시된 보다 더 긴 기간 이내에 사전심사 결정을 내린다. 다만, 요청인은 당사국이 요구하는 경우 사전심사 결정을 신청하는 상품의 견본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출하였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사전심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상황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심사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사전심사 결정을 거부하는 당사국은 사전심사 결정의 거부 결정에 대한 관련 사실과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4.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 결정이 내려진 날 또는 사전심사 결정에 명시된 다른 날부터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다. 제1항 및 제5항을 조건으로, 사전심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행정판정에 명시된 기간 동안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5. 발급 당사국은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다음의 경우 이 협정과 합치하게 사전심사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가. 관련 법 또는 규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

나.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었거나 관련 정보가 보류된 경우, 또는

다. 과학, 기술 및 생산방법의 발전에 따른 상품의 주요기능의 변화를 포함하여 결정의 근거가 된 중요한 사실 또는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경우

6. 발급 당사국은 신청인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거나 관련 정보를 보류한 경우,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을 소급하여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7. 자국의 법과 규정상의 모든 비밀유지 요건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품목분류 및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사안에 대한 자국의 사전심사 결정을 인터넷상에 공개한다.

제 4.10 조 재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대한 자국의 결정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가 다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 재심 중에 있는 결정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직원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된 최소한 한 단계의 행정적 재심, 그리고

나. 최종단계의 행정적 재심에서 내려진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이 다음의 인에게, 자국의 관세당국이 내린 원산지 결정 및 사전심사 결정에 대한 재심 및 불복청구에 대한 동일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부여한다.

가. 원산지 결정 대상이었던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인, 또는

나. 제4.9조에 따라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인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재심을 실시하는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고 그 당사국이 그 정보를 제4.20조에 따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 2 절 관세 협력 및 상호 지원

제 4.11 조 관세 협력

1. 양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각 당사국의 법 및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가. 수입 또는 수출을 규율하는 이 협정 규정의 이행 및 운영

나. 특혜관세대우 및 신청 절차

다. 검증절차

라. 상품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그리고

마. 수입 및/또는 수출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2. 양 당사국은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규정과 관련된 훈련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이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조직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가. 양 당사국 간 기관 협력 증진

나. 관세법령을 발전시키고 집행하기 위한 입법 및 기술적 사안에 관한 전문지식 제공 및 역량강화

다. 최신 통관 기술의 적용, 그리고

라. 통관절차의 간소화, 조화 및 자동화

3. 양 당사국은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규정된 문서가 권한있는 행정당국이 규정한 것 외에 그 이상의 증명, 인증, 공증 또는 다른 종류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정본으로 간주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제 4.12 조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 지원

1. 양 당사국은 특히 관세법 위반행위의 방지, 조사 및 대응을 통하여 관세법의 올바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권한 내에 있는 분야에서 이 장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상호 지원한다.

2. 이 절에 규정된 관세 사안에서의 지원은 형사 사안에서의 상호 지원을 규율하는 규칙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사법당국의 요청에 의해 행사된 권한에 따라 획득된 정보를 다루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정보의 전달이 그 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관세, 조세 또는 벌금을 회수하기 위한 지원은 이 절에서 다루지 아니한다.

3. 신청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 당국은 다음을 알린다.

가. 신청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출된 상품이 적절한 경우 그 상품에 적용된 통관절차를 명시하여 피요청 당사국의 영역으로 적절하게 수입되었는지 여부, 또는

나. 신청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적절한 경우 그 상품에 적용된 통관절차를 명시하여 피요청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적절하게 수출되었는지 여부

4. 신청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 당국은 자국의 법령 또는 규제의 규정의 틀 내에서 다음에 대한 특별 감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해왔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인

나. 관세법 위반행위에 사용될 의도가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방식으로 다량의 상품이 조립 또는 변형되어 왔거나 조립 또는 변형될 수 있는 장소

다. 관세법 위반행위에 사용될 의도가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방식으로 운송되거나 운송 될 수 있는 상품, 그리고

라. 관세법 위반행위에 사용될 의도가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운송 수단

5. 양 당사국은 관세법의 올바른 적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히 다음과 관련하여 획득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체 발의로 그리고 자국의 법, 규칙 및 그 밖의 법률문서에 따라 상호 지원한다.

가. 관세법 위반행위이거나 그렇게 보이는 행위로서,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행위

나. 관세법 위반행위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

다. 관세법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상품

라. 관세법 위반행위에 연루되거나 연루되어왔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인, 그리고

마. 관세법 위반행위에 사용되어 왔거나,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운송수단

6. 신청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 당국은 자국 영역 내에 거주하거나 설립된 수령인에게 신청 당국으로부터 나오고 이 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서류를 전달하거나 결정을 통보하기 위하여, 피요청 당국에 적용 가능한 법령 또는 규제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문서의 전달 또는 결정의 통보에 대한 요청은 영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한다.

제 4.13 조 지원요청의 형식 및 내용

1. 제4.12조에 따른 지원 요청은 서면으로 또는 양 당사국의 당국이 자국의 법에 따라 합의한 공식적인 안전한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요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문서가 그 요청에 첨부된다. 긴급 상황에서는, 구두 요청이 수용될 수 있으나, 즉시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 지원요청은 피요청 당사국의 법령 또는 규제의 규정에 따라 실행된다.

3.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은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가. 신청 당국

나. 요청되는 조치

다. 요청의 목적과 이유

라. 관련된 법령 또는 규제의 규정과 그 밖의 법률문서

마. 조사의 대상인 인에 관한 가능한 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설명, 그리고

바. 관련 사실과 이미 수행된 조사의 요약

4. 요청은 영어로 제출한다. 서류가 영어 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피요청 당국은 신청 당국에게 서류의 영어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요청이 위에 규정된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정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 4.14 조 지원요청의 수행

1. 피요청 당국은 자발적으로 또는 자국의 그 밖의 당국의 요청을 수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원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자국의 권한 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조사를 수행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준비를 한다. 이 항은 또한 피요청 당국이 스스로 수행할 수 없어 피요청 당국에 의해 그 요청이 전달된 그 밖의 모든 당국에도 적용된다.

2.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당사국 공무원은 제1항에 언급된 사건에 대한 조사 목적상 신청 당국이 필요로 하는, 관세법 위반행위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제1항 및 피요청 당국이 제시한 조건, 법, 규칙 및 그 밖의 법률문서에 따라 피요청 당국 또는 그 밖의 모든 관계 당국의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다.

3.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관련 당사국 공무원은, 관련된 다른 쪽 당사국의 합의와 그 당사국이 제시한 조건하에,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조사에 참석할 수 있다.

제 4.15 조 지원 제공 의무에 대한 예외

1. 당사국이 이 절에 따른 지원이 다음에 해당한다는 의견일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거나 특정 조건 또는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가. 이 절에 따라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당사국의 주권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특히 제4.16조제2항에 언급된 사례에서, 공공정책, 안보 또는 그 밖의 본질적인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산업, 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또는

라. 헌법에 위배되거나, 자국의 법·규칙 또는 그 밖의 법률문서에 위배되는 경우

2. 지원은 진행 중인 조사, 기소 또는 소송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근거로 피요청 당국에 의하여 연기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피요청 당국은 자국이 요구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 당국과 협의한다.

3. 신청 당국이 그렇게 요청받을 경우 그 자신도 제공할 수 없는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 당국은 요청시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한다. 그 다음 그러한 요청에 어떻게 응할지는 피요청 당국이 결정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사례의 경우, 피요청 당국의 결정과 그 이유는 지체없이 신청 당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제 4.16 조 정보교환 및 비밀유지

1. 이 절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 전달되는 모든 정보는 각 당사국에서 적용가능한 규칙에 따라 비밀 또는 제한적 성격의 것이 된다. 이는 공식적인 비밀엄수 의무의 적용대상이 되고, 정보를 받은 당사국의 관련 법에 따라 유사한 정보에 주어지는 보호를 향유한다.

2. 개인 자료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당사국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당사국에서 그 특정한 사례에 적용가능한 것과 최소한 동등한 방식으로 그러한 자료를 보호하기로 약속하는 경우에만 교환될 수 있다.

3.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시된 사법 또는 행정 소송 절차에서, 이 절에 따라 획득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이 절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양 당사국은 증거의 기록, 보고 및 증언, 그리고 법원에 제기된 소송 및 고소에서, 이 절에 따라 획득된 정보와 참조된 문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그 문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 권한 있는 당국은 그러한 사용에 대하여 통보받는다.

4. 획득된 정보는 오로지 이 절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다. 양 당사국 중 한쪽 당사국이 그러한 정보를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한 당국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는다. 그러한 사용은 그 당국이 제시한 모든 제한의 대상이 된다.

제 4.17 조 전문가 및 증인

피요청 당국의 공무원은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적용대상인 사안과 관련하여 요청 당사국의 사법 또는 행정 소송 절차에 전문가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고 그 소송에 필요할 수 있는 물품, 문서 또는 그 인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허가될 수 있다. 출석요청은 해당 공무원이 어느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출석해야 할 것인지와 어떠한 직위 또는 자격으로 신문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제 4.18 조 지원비용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전문가 및 증인,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통역사 및

번역사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이 절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서로에 대한 모든 상환청구를 포기한다.

제 4.19 조 양자 관세협약

1. 제4.21조를 저해함이 없이, 각 관세 당국은 품목분류, 관세평가 및 원산지 결정을 포함하여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운영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당국과의 협의를 언제라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양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관련 접촉선을 통하여 수행되며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2. 그러한 협이가 그러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그 사안을 제4.21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 위원회에 검토를 위하여 회부할 수 있다.

3. 각 관세당국은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목적상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하고 그러한 접촉선의 세부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양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자국 접촉선의 세부사항에 대한 모든 개정사항을 신속히 서로에게 통보한다.

4. 협의 요청 및 그에 대한 모든 응답은 영어로 작성하고 전자적 수단으로 송부한다. 협의 요청 또는 응답의 물리적 사본은 쿠리어 또는 팩스로 송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영어 및 자국 법이 요구하는 언어로, 위에 언급된 협의를 요청하거나 이에 응답할 수 있다.

제 4.20 조 비밀유지

1. 당사국은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그 정보를 보호한다. 비밀유지의 모든 위반은 각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취급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정보는 법 집행 목적상 또는 사법 소송 절차에서 공개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한도 외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 또는 정부의 명시적 허가 없이 공개되지 아니한다.

제 4.21 조 관세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관세당국과, 양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으로 구성된 관세위원회를 설립한다. 관세위원회는 원산지 규정, 원산지 절차, 무역원활화 및 관세 사안을 다루는 일을 담당한다.

2. 관세위원회는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고 그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

3. 관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효과적이고, 통일되며, 일관된 운영 보장

나. HS의 변경에 기초한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개정

다. 공동위원회에 다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해결 방안 권고

- 1)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해석, 적용 및 운영
- 2)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
- 3)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 그리고
- 4) 양 당사국 간 교역의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장 또는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운영 관행을 어느 한쪽 당사국이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라. 국제 표준에 따라 양 당사국 간 상업적 교류를 원활히 하는 통관 관행 및 표준 채택

마. 품목분류를 포함하여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해석, 적용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해결. 관세위원회가 품목 분류에 대한 결정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WCO에서 적절한 협의를 개최한다. WCO HS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권고는 양 당사국 간 구속력을 가진다.

바. 양 당사국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제3.17조(협약 및 수정)에 따른 수정에 대한 제안을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 그리고

사. 전자 증명 및 검증 시스템 개발 작업

4. 관세위원회는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수립된 메커니즘의 공동의 목적과 기능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결의, 권고 또는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

5. 관세위원회는 매년 또는 달리 합의하는 바에 따라 양국 간 교대로 회합한다.
6. 관세위원회는 각 회의 결과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4.22 조 이행

1. 양 당사국은 이 장에 언급된 의무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장의 틀 하에서 더 많은 이해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 양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특히 정보보호 분야에서 발효 중인 규칙을 고려하여 이 장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실제적인 조치와 방안에 대하여 결정한다. 그들은 이 장의 적용을 위한 보충적 제도의 개발을 권한있는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채택되는 세부이행규칙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고 추후 서로 통보한다.

제 3 절 정의

제 4.23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신청 당국이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하여 당사국에 의해 지정된 권한있는 행정당국을 말한다.

관세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관세청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콜롬비아의 경우, 국립 조세 및 관세 이사회 또는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된 그 승계기관

관세법이란 관세·부과금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금지·제한 및 각 당사국 관세영역의 경계를 넘어 통제된 물품의 이동에 대한 그 밖의 유사한 통제와 관련된 상품의 수입·수출 및 통과/환적에 관하여 각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집행하는 법과 규정을 말한다.

통관 절차란 각 관세행정기관이 통관관리의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운송 수단에 적용하는 취급을 말한다.

상품이란 이 협정의 범위와 관계없이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을 말한다.

운송 수단이란 인, 상품 또는 물품을 운송하여 영역으로 들어오거나 영역에서 나가는 다양한 종류의 선박, 차량, 항공기 및 짐 싣는 동물을 말한다.

관세법 위반행위란 양 당사국 중 어느 당사국의 관세법령에 대한 모든 위반 또는 위반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개인정보란 확인된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피요청 당국이란 지원 요청을 받기 위하여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권한있는 행정당국을 말한다.